

전력시장 직접구매제도 개요

- (개요) 전력시장(도매시장)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기사용자
 - (자격) 수전설비 용량 3만kVA 이상의 전기사용자 참여 가능
 - (거래개시절차) ①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신청 및 전력거래자 등록 신청 → ② 설비등록 신청 → ③ 계량설비 봉인 → ④ 거래개시 신청·승인
 - * 붙임. 직접구매자 등록 단계별 준비절차 및 서류 참조
- (정산) ① 전력량정산금 + ② 용량정산금 + ③ 부가정산금 + ④ 기타로 구성

① 전력량정산금 : 유효 구매전력량에 SMP 적용

$$\text{전력량 정산금} = \text{유효 구매전력량}^* \times \text{SMP(전력시장가격)}$$

* 유효 구매전력량 = 직접구매전력량(계량값) × 송전손실계수 × (1+배전손실계수) × (1+개별손실계수)

② 용량정산금 : 용량가격 적용전력에 용량정산가격 적용

$$\text{용량정산금} = \text{용량가격 적용전력} \times \text{용량정산가격} \times \text{역률조정계수}$$

* 용량가격 적용전력 = max(최대 유효 구매전력, 수전설비 용량의 30%)

* 용량정산가격 = 일반발전기의 용량가격 × 일반발전기의 평균 입찰용량 비율

* 역률조정계수 = 1 + max(0.9 - 역률, 0) ※ 역률이 0.9 미만일 경우 페널티 부여

③ 부가정산금 : 유효 구매전력량에 부가정산금 단가 적용

$$\text{부가정산금} = \text{유효 구매전력량} \times \text{부가정산금 단가}$$

* 부가정산금 단가 = 직전년도 전력시장 부가정산금 총액 / 총거래량

④ 기타 : 재생e 예측제도,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, 수요반응자원, 준준양급전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금 등에 대해 시간대별 총 전력거래량 대비 직접구매자 구매전력량 비율로 산정, 복지특례할인비용,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

- 이외 송전/배전 전력망 이용에 따라 전력망 이용요금 부과(한전 별도 계약)